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도일용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0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22.

발의의원 : 도일용 의원, 최상국 의원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,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 - 안 제1조 :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→ 제102조 및 제103조
- 정책지원관 신설 (안제5조)
 - 명칭, 직무범위, 배치 사항 등을 규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달성군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달성군의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1조(목적) ----- 제102조 및 제10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5조(정책지원관)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6.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<u>제5조 · 제6조</u> (생략)	<u>제6조 · 제7조</u>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